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4. 9.

제안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 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	2200544	박정 의원	2024. 6. 17	·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 회의(2024.9.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·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11.) 상정, 축조심사
	2200550	임이자의원	2024. 6. 17	
	2200786	김위상의원	2024. 6. 21	
	2200805	강득구의원	2024. 6. 21	·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12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
	2202427	박홍배의원	2024. 7. 31	·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4.9.11.) ·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11.) 상정, 축조심사 ·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12.) 상정, 축조심사 및 의결
	2202682	김선교의원	2024. 8. 9	
	2202859	박해철의원	2024. 8. 14	
	2203168	이수진의원	2024. 8. 23	
	2203365	최기상의원	2024. 8. 29	

나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 9. 12.)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다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(2024. 9. 12.)에서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,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·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.

이에 폭염·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·한파에 직·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텅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2호 중 “고온·저온”을 “고열·한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폭염·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9조(보건조치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건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	제39조(보건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방사선·유해광선· <u>고온·저온·초음파·소음·진동·이상기압</u> 등에 의한 건강장해	2. ----- <u>고열·한랭</u> ----- -----
3. ~ 6. (생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7. <u>폭염·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